

# 한국정밀공학회지 논문심사규정

제정 1984년 5월 4일

개정 2015년 10월 16일

**제1조 목적****제2조 투고 및 접수****제3조 심사위원 선정****제4조 심사 방법****제5조 심사 기간****제6조 저자수정기한****제7조 게재 판정****제8조 특집논문심사****제9조 비밀유지****제10조 이의제기****제11조 심사료****제1조(목적)**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밀공학회(이하 학회라 한다) 한국정밀공학회지(이하 학회지라 한다)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투고 및 접수)**

- 가.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된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의 논문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며 학회는 이를 접수한다.
- 나. 기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편집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투고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.
- 다.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편집장은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. 연구 분야는 별도로 규정된 '논문투고 및 게재규정'과 '논문집필요령'에 따른다.

**제3조(심사위원 선정)**

- 가. 편집장은 접수된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분야 편집이사에게 심사 배정하며, 편집이사는 부문별로 선정된 편집위원 중 1인을 심사주관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.
- 나.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장에게 추천한다.
- 다.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,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. 심사위원으로는 논문저자와 소속이 다른 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편집장은 추천 받은 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을 송부한다. 추천 받은 위원 중 심사거부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재추천을 요청한다.

**제4조(심사 방법)**

- 가. 심사위원은 논문의 종합평가 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심사결과를 기술해야 하며, 필요 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.

나. 심사결과는 '채택가(Accept)', '수정 후 채택(Accept Subject to Minor Revisions)', '수정 후 재심(Re-Review after Major Revisions)', '채택불가(Reject)' 중 선택한다.

## 제5조(심사 기간)

가. 학회지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위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,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제1차 심사의 경우 심사수락일로부터 14일 이내, 제2차 심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나.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판정은 심사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다. 심사위촉 후 14일이 지나도록 심사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라.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소요된 시점까지 심사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.

- ①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: 해당논문의 편집위원이 3개월 소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.
- ②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경우: 해당논문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이 3개월 소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. 단,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을 겸한 경우 편집이사 1인의 심사만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.

## 제6조(저자수정기한)

가. 저자는 편집장의 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논문수정요구를 반영한 수정 논문을 접수일로부터 수정 후 재심일 경우 30일 이내, 수정 후 채택일 경우 14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수정논문 접수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취소 할 수 있으며, 저자가 그 이후 계속 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다시 투고 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게재 판정)

가.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논문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종합평가를 받아 편집장이 최종 결정한다.

나. 심사위원 2인 이상이 '채택불가' 판정 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.

## 제8조(특집논문심사)

가. 편집장은 특집논문을 주관할 책임편집인을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나. 책임편집인이 학회 이사 또는 부문위원장인 경우, 책임편집인의 주관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그 결과만으로 채택여부를 판정한다. 책임편집인이 학회 이사 또는 부문위원장이 아닌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담당할 편집이사를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주관하도록 한다.

## 제9조(비밀유지)

가. 심사위원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다.

나. 저자의 이름은 심사위원에게 밝힐 수 있다.

다.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아니한다.

## 제10조(이의제기)

가. 저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편집이사를 통해서 한다.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교환을 하고자 할 때, 편집이사의 중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나.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## 제11조(심사료)

필요 시 편집이사,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편집비를,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